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가합1022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원

담당변호사 박상영, 허원록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혜인, 정선희

변 론 종 결 2022. 7. 6.

판 결 선 고 2022. 9. 28.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20. 4. 21. 접수 제1742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여오던 C은 2019. 2. 28.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1,484,940,000원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 2) 원고는 2019. 11. 26.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982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12. 3.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265,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6회로 분할하여 2021. 1. 31.부터 2023. 2. 28.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2020. 12. 23.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처분행위 등

- 1) C은 2017. 4.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D조합, 채무자 C, 채권최고액 93,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 2) C은 2020. 4. 9.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21.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17428호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전에 성립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갑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0. 4. 9. 당시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적극재산으로 ① 서울 동작구 E 대 100㎡ 및 그 지상건물, ② 서울 서초구 F외 2필지 G건물 제11층 H호 ③ 위 건물 제13층 I호(이하 위 각 부동산들을 ‘제○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유하고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2020. 4. 9. 당시 ①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2020. 2. 11.자로 근저당권자 J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6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20. 4. 8.자로 근저당권자 K,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2019. 3. 19.자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L, 채무자 C,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③ 제3부동산에 관하여는 2019. 9. 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L, 채무자 C,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20. 10. 30. 가등기권자 주식회사 M의 매매예약 원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마쳐진 상태였고, ④ 2021. 1. 26. 제2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자 N, 임차보증금 175,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제1 내지 3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89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2) C이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한 재산목록(갑 제10호증)에 금전채권으로 O로부터 양수한 200,000,000원, P에 대한 계금채권 611,990,000원, Q에 대한 계금채권 130,000,000원, R에 대한 계금채권 280,000,000원, S에 대한 계금채권 200,000,000원이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위 재산목록은 피고의 배우자인 C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1. 6. 27.에 작성한 것으로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채권들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채권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거나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어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정하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위 채권들도 적극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 없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이 C에게 명의신탁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 여부

앞서 본 것처럼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로써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으므로, C과 피고에게 사해의사 내지 악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고,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므로(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C과 피고에게 사해의사 내지 악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21.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18.

근저당권자를 D조합,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26,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22. 5. 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명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철, 판사 박창희, 판사 임휘재

[별지]

목록

1. 경기 양평군 T 임야 332㎡ 중 1/2 지분
2. 경기 양평군 U 임야 1,347㎡ 중 2/3 지분
3. 경기 양평군 V 임야 826㎡ 중 1/2 지분
4. 경기 양평군 W 임야 826㎡ 중 1/2 지분
5. 경기 양평군 X 임야 235㎡ 중 1/2 지분
6. 경기 양평군 Y 임야 757㎡ 중 174.5/757 지분
7. 경기 양평군 Z 임야 766㎡ 중 1/2 지분
8. 경기 양평군 AA 임야 1,954㎡ 중 1/2 지분
9. 경기 양평군 AB 임야 138㎡ 중 1/2 지분
10. 경기 양평군 AC 임야 673㎡ 중 1/3 지분. 끝.

